

환경 산업 연구 단지 내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성능 검사 센터 신축에 따른
도시 계획 시설 (연구 시설) 사업
실시 계획인가(변경) 신청서

2017. 07



환 경 부



① 실시계획 인가(변경)의 내용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나. 명 칭 :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가. 위 치(변경없음) : 인천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확장예정부지 내

나. 면 적(변경없음) : 180,000m²

다. 건축 계획(변경)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환경산업연구단지		(변경없음)
발 주 기 관	환경부		(변경없음)
위 치	인천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확장부지 내		(변경없음)
용 도	교육연구시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없음)
대 지 면 적	180,000m ²		(변경없음)
건 축 면 적	당 초	20,822.94m ²	증) 1,481.47m ²
	변 경	22,304.41m ²	
건 폐 율	당 초	11.57%	증) 0.82%
	변 경	12.39%	
연 면 적	당 초	44,237.42m ²	증) 1,827.50m ²
	변 경	46,064.92m ²	
용적률 산정면적	당 초	41,607.10m ²	증) 1,827.50m ²
	변 경	43,434.60m ²	
용 적 률	당 초	23.12%	증) 1.01%
	변 경	24.13%	
조 경 면 적	83,185.15m ²		(변경없음)
규 모	지하 1층 / 지상 4층		(변경없음)
주 차 대 수	당 초	420대	증) 21대
	변 경	441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변경없음)
외 부 마 감	T30화강석, T24로이아르곤 복층유리, 샌드위치패널		(변경없음)



○ 시설별 면적표

구 분	면적(㎡)		증감	비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73,775.51	75,603.01	증)1,827.50	100.0	100.0	
합 계	44,237.42	46,064.92	증)1,827.50	60.0	61.0	연면적합계
연구 및 실험지원동	32,032.66	32,032.66	-	43.4	42.4	
PILOT TEST	6,661.49	6,661.49	-	9.0	8.8	
GUEST HOUSE 시설	2,148.23	2,148.23	-	2.9	2.8	
POWER PLANT 시설	2,014.01	2,014.01	-	2.7	2.7	
시제품 생산지원시설	1,064.95	1,064.95	-	1.4	1.4	
옥외화장실 (휴게실, 창고 포함)	49.64	49.64	-	0.1	0.1	
파쇄 및 탈취시설	64.80	64.80	-	0.1	0.1	
장비가스 보관실	120.00	120.00	-	0.2	0.2	
시험기초시설	23.20	23.20	-	0.1	0.1	
경비시설	58.44	58.44	-	0.1	0.1	
TEST-BED 시설	29,538.09	29,538.09	-	40.0	39.0	연면적제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	-	1,827.50	증)1,827.50	-	2.3	연면적산정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환경부 장관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8.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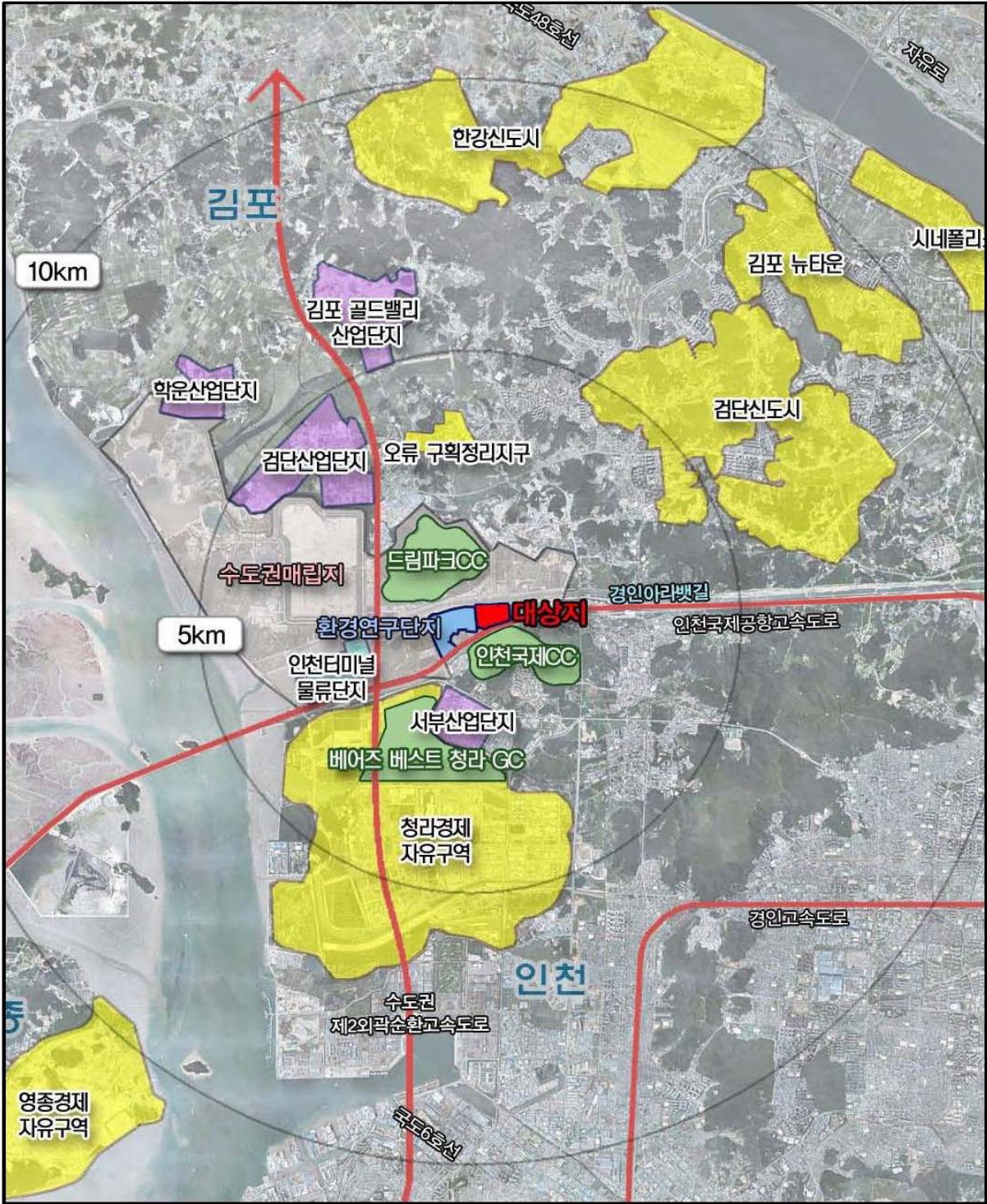


② 첨부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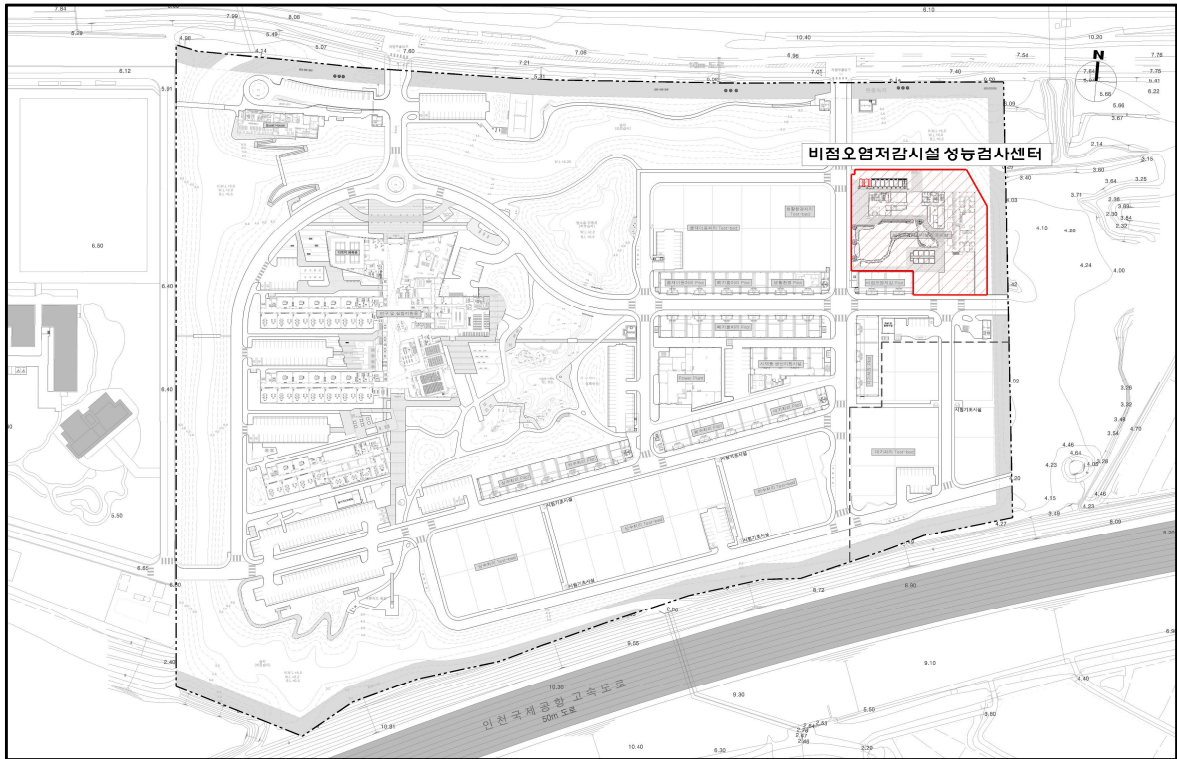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변경없음)

가. 위치도



나. 환경산업연구단지 내 금회 시설(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 위치도



다. 금회 시설(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 조감도



라. 계획평면도 : 공사설계도서 참고



2. 공사설계도서(변경) : 별첨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변경 없음	경서동	공유수면 (종합환경연구단지 확장예정부지 내)		180,000	환경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공유수면 매립면허 관리권자	매립면허 권리분할 협약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가. 공공·문화체육시설(제7절 연구시설)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연구시설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확장예정부지 내	-	증)180,000	180,000		

■ 연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연구시설	· 신설 : 연구시설 · 면적 : 180,000㎡	· 환경산업에 대한 연구 및 실증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환경관련 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국내 환경산업 시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한 연구시설 신설

■ 연구시설 건축물의 범위

도면표시 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 고
-	20% 이하	80% 이하	4층 이하	자연녹지지역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1부 :
행정청이 공유수면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당없음

6.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 :
행정청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당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 별첨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도서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 (첨부)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 권리의 분할에 관한 협약서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 권리의 분할에 관한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환경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이하 “면허권”이라 한다)를 분할함으로써 구역별로 보유기관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전 협약과의 관계)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 권리의 양도·양수에 관한 협약서(“02.6.12)”는 효력을 상실하고 본 협약서만 효력을 갖는다.



제3조(분할대상) 환경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보유한 면허권은 “수도권 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15.6.28)” 제4면 기재 총 면적 16,853,684 m² 중 제2외곽순환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를 제외한 16,670,861 m²에 대하여 존재하는 면허권이다. 단, 이 면적은 실측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제4조(지분) 제3조에 따른 16,670,861 m²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29.15869%, 서울특별시장은 70.84131%의 비율로 면허권을 각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5조(분할방법) 환경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은 첨부 현황도와 같이 구획된 부분의 면허권을 아래 표와 같이 각각 단독 소유하는 방법으로 면허권을 분할한다.

구 분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전 체
총면적	4,861,004 (29.15869%)	11,809,857 (70.84131%)	16,670,861 (100%)
1매립장 소계	3,522,679	566,153	4,088,832
① 공사 본관	78,134		
② 녹색바이오단지	468,578		
③ 기존 고화처리장	18,300		
⑥ 공사 별관, 주민협의체 등	40,000		



⑦ 완충녹지, 양묘장 등	1,201,950		
⑨ 주민체육공원	80,094		
⑩ 침출수처리장	204,771		
⑪ 50MW 발전소	40,850		
⑧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1,390,002 (90.65%)	143,425 (9.35%)	
④ 수영장		100,625	
⑤ 승마장		322,103	
⑫ 제2매립장, 자제야적장 등		3,811,753	3,811,753
3매립장 소계	410,089	2,660,768	3,070,857
3-1 매립장		1,033,000	
3-2 매립장		530,000	
3-3 매립장		571,000	
환경문화단지 등		126,768	
슬러지 처리시설(1단계)	15,652		
슬러지 처리시설(2단계)	15,495		
SRF 연료화시설	9,215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26,945		
실증실험시설, 연료화 시설 등	342,782		
4매립장 소계		3,889,309	3,889,309
안암도유수지		1,830,000	
인천시 행정구역		431,104	
경기도 행정구역		1,628,205	
기타부지 소계	937,849	1,055,084	1,992,933
⑮ 캠핑장		92,386	
⑰ 잔여부지		239,114	



⑱ 경서매립장		330,000	
⑲ 잔여부지		258,931	
⑳ 잔여부지(야구장, 축구장)		77,115	
㉑ 잔여부지		27,466	
㉒ 잔여부지(농경지)		27,686	
㉓ 잔여부지		2,386	
⑩ 문화재단, 야구장·축구장 등	145,849		
⑪ 환경연구단지	490,500		
⑫ 환경실증화단지(확장예정지 포함)	301,500		
제2외곽순환도로 감소분(남측)	-	-149,297	-149,297
제2외곽순환도로 감소분(북측)	-9,613	-23,913	-33,526

제6조(비용부담) 이 협약 이행에 필요한 제 비용은 발행 시마다 제4조의 지분 비율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각각 부담한다.

첨부 : 현황도 1부

2015. 11. /o.

환경부장관 (인)

서울특별시장 (인)

